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합521692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곽호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변론 종결 2019. 2. 28.

판결 선고 2019.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89,041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6. 8. 2.부터 2017. 1.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2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및 약정이자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9,989,041원(= 투자금 280,000,000원 + 일부 변제된 나머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9,989,041원) 및 그 중 투자금 2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등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행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5. 11. 11. 설립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2016. 8. 2.부터 2017. 1. 20.까지 대표이사였던 사실, 원고가 2016. 8. 23. 이 사건회사와 사이에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투자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 피고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계약서에 기명날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 등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앞서 피고가 제시한 계약서 초안을 기초로 계약내용을 상호 검토한 끝에 2016. 8. 23. 최종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피고를 '이해관계인'으로 표시하면서(제2조),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지배자'라고 정의하고(제1항), '이해관계인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를 상호 연대하여 이행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원고는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에게 사업계획서, 향후 6개월의 수입 및 지출계획서 등을 제출할 것과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에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위와 같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제3조).

(3)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의 지출 및 그로써 발생하는 프로젝트 매출을 별도의 관리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관리계좌에 있는 금원은 모두 원고와 사전 협의한 다음 사용하며, 관리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원고와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13조).

(4)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투자금을 원고에게 제출한 프로젝트와 사업계획에 직접 관련된 개발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4조 제3항, 제15조).

(5) 원고는 1년 이내에 투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 등을 위와 같이 회수하도록 할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제28조 제1항, 제4항).

(6)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 정한 바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투자금 등의 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투자금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의 투자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제3항). 다만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투자금 등의 상환청구 대신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제4항).

나)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자료

(1)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15 회계연도 및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2016 회계연도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정(총계)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비 고
자 산	109,089,114원	487,108,495원	378,019,381원 증가
부 채	80,754,061원	420,948,847원	340,194,786원 증가 (원고의 투자금 280,000,000원 포함)
자 본	20,000,000원	100,000,000원	80,000,000원 증가

(2) 이 사건 회사는 2015 회계연도에 8,335,053원의 당기순이익이, 2016회계연도에 40,606,705원의 당기순손실이 각 발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역 등

(1) 원고는 2017. 1.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017. 8. 2.경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등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피고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보증인이 되어 저리(低利)의 차입금을 유치해올 생각이었다'며 '올해 안으로 완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7. 9. 13.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였고, 원고가 같은 달 14.경 피고에게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매출을 발생시켜 투자금을 상환하려는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는 2018. 3. 13.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기에 상환할 생각으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저리의 차입금을 유치할 수 있다면 (스스로) 연대보증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등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는 '이해관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위 계약서에 이해관계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은 투자금의 관리와 용도, 지출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의 승인 또는 협의를 얻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투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상환하거나 위약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피고가 그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모두 이해관계인인

피고가 일반적인 경영상의 선관주의의무를 넘어 투자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까지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지 않았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제시한 계약서 초안에 기초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 280,000,000원은 이 사건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자산 총계 109,089,114원을 상당히 상회하는 규모였다. 이 사건 회사의 2016 회계연도 기준 자산의 증가는 대부분 부채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고, 증가된부채 가운데 원고의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2.3%(= 280,000,000원 / 340,194,786원 × 100%)에 이르렀으며, 특히 2016 회계연도에는 40,606,705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이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투자계약의 경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이해관계인의 책임은 투자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명시된 것이라고 봄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저리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증의사를 반복하여 표시하거나 '올해 안으로 완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투자계약의 경위, 피고의 지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태, 원고의 투자금 규모 및 투자금의 상환을 확고히 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등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의사로 이 사건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언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 라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행적을 감추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현저히 어렵게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등에 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 2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투자금의 변제기 이후인 2017. 9.경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하는 원고와 말다툼을 한 뒤 원고에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투자금 등에 관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합계 309,989,041원[= 투자금 280,000,000원 + 위 투자금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2017.9. 19.까지 발생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가운데 원고가 위 일자에 지급받았다고자인하는 30,000,000원을 변제 충당한 나머지 29,989,041원(= 280,000,000원 × 0.2 × 391/365 - 30,000,000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및 그 중 투자금 280,000,000원에 대하여 위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투는 날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옥, 판사 김준영, 판사 강영선